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양향자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009

발의연월일: 2020. 8. 18.

발 의 자:양향자・이용빈・신정훈

황운하 • 박성준 • 최혜영

오영환 • 전혜숙 • 고용진

김영식 · 김민철 · 이성만

정희용 · 성일종 · 조경태

이은주 · 김민석 · 정운천

양정숙 • 윤재갑 • 이수진

이 영・김영배・류호정

김형동 · 남인순 · 윤미향

권칠승 의원(28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아동학대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계획 및 피해아동 및 그가족, 아동학대행위자를 대상으로 치료·교육·상담 프로그램 등이 포함된 사례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피해아동이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 전 거주지와 현 거주지의 지방자치단체 간 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 지원의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음. 또한 피해아동과 그 가족, 아동학대 행위자에게 제공하는 치료·교육 등의 프로그램에 이들을 의무적으로 참여시킬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피해아동이 다른 시·도 또는 시·군·구로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 이전하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도록 명시하고 피해아동과 그가족, 아동학대행위자에게 제공하는 상담·교육·심리적 치료 등에 이들이 의무적으로 참여하게 하며 이를 어길 시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임(안 제22조, 제29조, 제29조의2 및 제75조제3항제1호의3·제1호의4신설).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17206호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 제22조의4제6항을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지역의 피해아동이 거주지를 다른 시·도 및 시·군·구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보호계획 및 사례관리계획이 차질 없이 수립·시행되도록 이전하는 거주지의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29조제3항 중 "하여야"를 "하고, 피해아동을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로 한다.

법률 제17206호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 제29조의2 제목 중 "권고"를 "제공"으로 하고, 같은 조 전단 중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보장원"을 "보장원"으로, "받을 것을 권고할 수 있다"를 "제공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75조제3항에 제1호의3 및 제1호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의3. 제29조를 위반하여 보호자를 포함한 피해아동의 가족에게 제 공하는 지원에 참여하지 아니하거나 피해아동을 참여하게 아니한 자
- 1의4. 제29조의2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상담·교육·심리적 치료 등에 참여하지 아니한 자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법률 제17206호 아동복지법	법률 제17206호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	일부개정법률
제22조의4(피해아동보호계획의	제22조의4(피해아동보호계획의
수립 등) ① ~ ⑤ (생 략)	수립 등) ① ~ ⑤ (현행과 같
	<u>♥</u>)
<u><신 설></u>	<u>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u>
	<u>수·구청장은 해당 지역의 피</u>
	해아동이 거주지를 다른 시ㆍ
	도 및 시・군・구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보호계획 및 사례관
	리계획이 차질 없이 수립ㆍ시
	행되도록 이전하는 거주지의
	시 · 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u>⑥</u> (생 략)	<u>⑦</u> (현행 제6항과 같음)
제29조(피해아동 및 그 가족 등	제29조(피해아동 및 그 가족 등
에 대한 지원) ①·② (생 략)	에 대한 지원) ①・② (현행과
	같음)
③ 보호자를 포함한 피해아동	3
의 가족은 보장원 또는 아동보	
호전문기관이 제1항에 따라 제	
공하는 지원에 성실하게 참여	
<u>하여야</u> 한다.	하고 피해아동을 참여하게 하
	<u>여야 한다.</u>
④ ~ ⑥ (생 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법률 제17206호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

제29조의2(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교육 등의 권고)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보장원의 장 또는 아동보호전 문기관의 장은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하여 상담・교육 및 심리적 치료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아동학대행위자는 정당한사유가 없으면 상담・교육 및심리적 치료 등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한다.

제75조(과태료) ①・② (생 략)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 1의2. (생략)

<신 설>

<신 설>

법률 제17206호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
제29조의2(아동학대행위자에 대
한 상담ㆍ교육 등의 제공) 보
 장원
제공하
_ 여야 한다
<u> </u>
•
제75조(과태료) ①・② (현행과
같음)
(3)
③
1 1시0 (취기기 기수)
1. · 1의2. (현행과 같음)
1의3. 제29조를 위반하여 보호
자를 포함한 피해아동의 가족
에게 제공하는 지원에 참여하
지 아니하거나 피해아동을 참
여하게 아니한 자
1의4. 제29조의2를 위반하여 정
당한 사유 없이 상담ㆍ교육ㆍ

	심리적 치료 등에 참여하지
	<u>아니한 자</u>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